의안번호	제 860 호
의 결	2021년 월 일
연월일	(제 희)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860

제출연월일 : 2021. 10. 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맹동면·덕산읍 고등학교 평준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인 88.11%가 찬성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음성군 맹동면·진천군 덕산읍 지역까지 확대하고, "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" 조건을 현실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□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로 한다.
 - →"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
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
 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"음성군 맹동면·진천군 덕산읍으로"로 한다." 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관계법령: 별첨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 로"를 "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음성군 맹동면·진천군 덕산읍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제2조의 "음성군 맹동면·진천군 덕산읍"은 2023학년도 입학 생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행 혅 개 정 아 제2조(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 제2조(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 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 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 역) 「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역) -----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 다)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(읍 • 면 -----청주시(읍·면 지역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 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 • 면 지 면 지역은 제외한다)로 한다. 역은 제외한다), 음성군 맹동면 ·진천군 덕산읍으로 ---.

관계법령

- 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[시행 2021. 6. 23.] [대통령령 제31790호, 2021. 6. 22, 일부개정]
- 제77조(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)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.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**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**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후기학교 (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)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.
 - 1. 학교 간 거리,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
 - 2.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
 - 3.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**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**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
 - 가. 학교군 설정
 - 나. 학생배정방법
 - 다.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
 - 라.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
 - 마.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·특성화 계획
 - 4.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.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·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제3호·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,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- □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**해제에 관한 조례** [시행 2020. 1. 3.] [충청북도조례 제4354호, 2020. 1. 3., 일부개정]
- 제2조(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)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, 충주시(읍·면 지역은 제외한다)로 한다.
- 제3조(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·해제)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·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·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부칙< 제3638호, 2014. 3. 28.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 제4354호, 2020. 1. 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조의 "충주시(읍·면지역은 제외한다)"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